

경남신문

knnews.co.kr

2008년 9월 25일 목요일 음력 8월 26일

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
행복Dream적금⁺

콜센터: 1600-8585

종교가 생김새다  **경남은행**

제19365호 <1판> 1946년 3월 1일 창간

진동-마산 국도건설공사 (5단계) 보상 계획 및 열람 공고

『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-24호 (2006.02.01)』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되어, 우리 공사에서 보상을 대행하고 있는 『진동-마산 국도건설공사(5단계)』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,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익사업의 개요

사업명	사업시행자	보상대행자	사업위치	사업기간
진동-마산 국도건설공사 (5단계)	부산지방 국토관리청	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	경남 마산시 진북면 대평리, 이목리 일원	2006. 2 ~ 2014. 2

2.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

구분	소재지	지번				
토지	경남 마산시 진북면 대평리	12-2	13	13-1	13-2	13-4
토지	경남 마산시 진북면 대평리	19	19-1	20	20-1	21-1
토지	경남 마산시 진북면 대평리	22-1	30-9	58	58-1	58-3
토지	경남 마산시 진북면 대평리	59	59-1	59-2	60-2	60-3
토지	경남 마산시 진북면 대평리	61-1	62-1	62-2	63-2	63-3
토지	경남 마산시 진북면 대평리	64	64-1	65-2	67-2	153-1
토지	경남 마산시 진북면 대평리	154-2	154-3	155-1	155-2	156-1
토지	경남 마산시 진북면 대평리	156-3	157-1	157-3	172-1	172-2
토지	경남 마산시 진북면 대평리	173-1	173-2	174-1	174-2	174-6
토지	경남 마산시 진북면 대평리	190-6	190-7	193-1	194-2	194-3
토지	경남 마산시 진북면 대평리	194-4	195-2	195-4	195-5	195-6
토지	경남 마산시 진북면 대평리	195-7	195-8	195-9	196-2	196-3
토지	경남 마산시 진북면 대평리	199-1	199-8	271-2	273-2	274-2
토지	경남 마산시 진북면 대평리	274-3	274-4	274-5	274-6	274-7
토지	경남 마산시 진북면 대평리	274-10	274-11	274-12	274-13	275-2
토지	경남 마산시 진북면 대평리	276-2	277-2	277-4	277-12	277-14
토지	경남 마산시 진북면 대평리	280-2	280-4	280-6	281-1	281-2
토지	경남 마산시 진북면 대평리	281-4	282-1	282-2	282-11	348-3
토지	경남 마산시 진북면 대평리	348-10	-	-	-	-
토지	경남 마산시 진북면 이목리	84-1	84-2	84-3	84-7	84-8
토지	경남 마산시 진북면 이목리	84-9	84-10	85-2	157	157-1
토지	경남 마산시 진북면 이목리	159	160-1	175-2	175-4	177-1
토지	경남 마산시 진북면 이목리	177-2	177-3	-	-	-
물건	상기 토지 상에 소재한 지장물건 등 보상대상 일체					

※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 토지사업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3. 열람 및 이의신청

가. 열람(이의신청) 기간 : 2008. 09. 25(목) ~ 2008. 10. 08(수)

나. 열람장소

-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 토지사업팀

【경남 창원시 웅호동 4-2 한국토지공사 3층 ☎(055)278-0733-5】

다. 이의신청 방법 :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 토지사업팀에 서면으로 제출

4. 보상 시기 : 2008. 10. 이후 (추후 별도통보)

5. 보상방법 및 절차

가.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, 동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하며, 본인 또는 대리인과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합니다.

나.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며, 등기 없는 또는 등기할 수 없는 물건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 등 별도의 소유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
6. 기타

가.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(1인)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 토지사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열람결과 대상 토지·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시기에 별도로 개별 통지하여 드릴 계획이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 토지사업팀 ☎(055)278-0733-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8년 9월 25일

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

(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1조에 의한)

위 보상수탁기관

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장